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회계 내역 정기 제공 등〉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82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회계 내역 등 정기 제공 ..... | 2  |
| 2.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조사 근거 신설 .....     | 6  |
| 3.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명확화 .....               | 10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6. 24.

다. 회 부 일: 2024. 6. 2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 Ⅲ. 검토의견

#### 1.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회계 내역 등 정기 제공

#####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에 현행의 회계 내역 외에도 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회계처리) ① (생략)                                                                                      | 제14조(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
|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br>-----<br>-----<br>-----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br>-----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41조(과태료) ① (생략)                                                                                       |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② -----                                                                                                                                                          |

|                                                                                                                                                        |                                                                                                                                                                     |
|--------------------------------------------------------------------------------------------------------------------------------------------------------|---------------------------------------------------------------------------------------------------------------------------------------------------------------------|
| <p>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2. (생략)</p> <p>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u>회계장부</u>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4. ~ 6.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생략)</p>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4조<sup>1)</sup>제2항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sup>2)</sup>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기획사)<sup>3)</sup>가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하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공개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 지급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소속사와의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회계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sup>4)</sup> 그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간 수익 분배 등에 관한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회계 내역 등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에 현행의 회계 내역 외에도 현행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아울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sup>5)</sup>

---

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대중문화예술산업 불공정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연기자가 소속사와 계약전 전속계약 조건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43.6%가 “계약조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전속계약 조건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속사에 직접 물어본다는 응답은 16.7%인데 반해 관련 협회나 선배 등에 물어본다는 응답이 37.0%로 소속사에 계약 조건 및 수익 분배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추론할 수 있음.

5) 개정안과 동일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2023. 4. 21. 의결하였으나, 해당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협회<sup>6)</sup>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미 현행법 및 표준계약서 등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과 같은 의무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제14조제3항이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45일에서 최대 90일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준비 기간을 둘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따른 ‘보수에 관한 사항’<sup>7)</sup>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런데 현행법 제14조제3항의 ‘보수의 지급’에 관한 준비 기간은 실제 재원 확보 및 금전 지급에 소요기간이 필요한 데 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은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

계류된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6)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7) ‘보수에 관한 사항’의 세부 내용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 2.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조사 근거 신설

###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 ③ (생략)<br><u>&lt;신설&gt;</u> |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6조<sup>8)</sup>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음원 수익 지급 지연 등 부당한 이익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sup>9)</sup>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임.

- 
-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국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중문화사업자등에 대해 출석요구·진술의 청취,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의 확인을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아울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sup>10)</sup>

다만, 관련 협회<sup>11)</sup>의 경우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예술인 복지법」<sup>12)</sup>, 「방송법」,<sup>13)</sup>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p>14)</sup> 등 다른 입법례는 자료제출 의무 등 미이행

---

10) 개정안과 동일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2023. 4. 21. 의결하였으나, 해당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11)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12)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3)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 그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출석요구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명확화

####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관련 현행 규정 중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권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략)<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략)<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br>-----.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1조는 본 법률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 규정으로, 비밀유지·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대중문화예술용역의 계약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계장부 작성·비치·제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 이 경우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4항).<sup>15)</sup>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현행법 제29조제4항<sup>16)</sup>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sup>17)</sup>

이에 개정안은 위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9.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이는 지난 2020. 6. 9. 위 제3항의 신설 과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설 조항의 취지 및 여타 과태료 관련 규정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상황임(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2023.8.8.)」).

|              |
|--------------|
| 문 의 처        |
| 02)6788-5376 |